

	담당	팀장	대표
결재			

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동의서

1. 대상근로자

성명		생년월일	
부서		직책/직무	

2. 동의내용

1)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,본 동의서를 취합하고자 합니다.

2) 당사 근무기간 중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동의하는 여성근로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자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상기 본인은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동의합니다.

동의일자: 20 년 월 일

근로자: (서명)

회사명: (직인생략)